

## 참고문헌

- 류건식,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 주최 정책세미나, 2003년 10월., pp. 67-120.
- 류건식, 「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 『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p.142.
- 성주호, 「연기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 『보험개발연구』, 2004년 3월., pp. 67-96.
-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예탁지』, 2003. 4., pp. 1-40.
- 민재성, 김원식,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KDI, 1990.11
- E. Philip Davis, *Pension Fund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Mutual Funds and the Retirement Market, Fundamentals*, July 1999.
-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 OECD,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 OECD, *Supervisory Structure for Private Pension Fund : Survey Analysis*, 2003.11.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 山口修, 『確定拠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3. 5.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中島富三, 『確定拠出年金』, 國政情報센터 2002. 8.
- 富士綜合研究所(2002), 『企業年金の資産運用』, 日本法令, 2002년 11월, p. 165
- 厚生年金基金聯合會 編, 『運用自由化時代の年金基金の資産運用』, 東洋經濟新報社, 1999.2.
- 中央三井信託銀行 確定拠出年金研究會 著, 『企業のための制度設計Guide, 金融財政事情研究會』, 平成12年 12月.
- 吉原健二, 『21世紀の 企業年金』, 東洋經濟新報社, 平成9年 9月.

## <부록>

### <별첨 I>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보험회사 :

부 서 :

작 성 자 :

퇴직연금제도가 금년 7월 도입예정으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제 감독은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선진국의 규제감독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연금기금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규제감독이 보다 정형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기관, 근로자, 기업, 감독당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감독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설문서는 우선 수탁기관입장에서 퇴직연금 규제감독방안이 어떻게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가를 사전에 살펴보고자 작성한 설문서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설문조사과정에서 얻어진 개별 보험회사의 자료 및 내용 등은 결코 외부에 실명으로 공표하거나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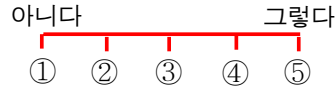
2004. 2. 18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내용문의사항 및 설문조사결과는 keon@kidi.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I.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I-1)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은 수익성중시 규제감독, 안정성중시 규제감독 중 어느 규제감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익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 ② 안정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I-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정부의 지나친 규제제도 ② 높은 관리비용
- ③ 복잡한 보험수리적용 ④ 제도와 관계없는 비즈니스상의 사정
- ⑤ 법령준수를 위한 비용증대 ⑥ 빈번한 법령변경
- ⑦ 기타 : ( )

I-3)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신탁제도에 대한 노사인식부족으로 영미의 지배구조보다는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 ).

I-4) 신중한 투자자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기여형보다 확정급여형은

오히려 엄격한 투자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5)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기금운용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규제(Legal List Rule)가 질적 규제보다 바람직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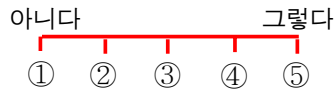
I-6) 점진적으로 연금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

I-7)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 자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FAS 87 등)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

I-8) 자산중시의 리스크관리체제에서 잉여금(부채)중시의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II-1)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

자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2) 원칙적으로 충실의무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하다( ).

II-3) 연금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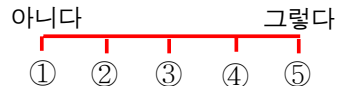
II-4) 제도도입초기에는 원금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 상품(법률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5) 향후 근로자의 금융상품지식 증대, 영미식 신탁제도의 발전,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II-6)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Ⅲ.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Ⅲ-1) 연금운용의 규제완화패턴을 감안하는 경우 확정기여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된다(            ).
- Ⅲ-2)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
- Ⅲ-3)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 Ⅲ-4)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독려대책이 요구된다(            ).
- Ⅲ-5)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 ① 최소 책임준비금제도    ② PBGC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

IV-2)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하다 (    ).

IV-2-1)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IV-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현재 근로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당하다    ② 5천만원~1억원이 적당
- ③ 1억원~1억 5천만원이 적당    ④ 1억5천만원 이상이 적당

IV-4)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1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2항>



(        ).

V-3) 운용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고하셨습니다.

## &lt;별첨 II&gt;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투자규제

국명	투자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호주	없음	10%에서 2001년 1월 5%로 하향 (연금 가입자에 대한 용자나 금융 지원 금지)	없음	없음
오스트리아	없음	감독당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10%까지 허용	35% 이상 자산을 담보부채권, 국채, 유로화표시 회사채에 투자 50% 비유로권 해외자산 투자	없음
벨기에	-10% zone A 이외 지역의 주정부, 지역공공기관 또는 회사 -10% 비상장시장에서의 주식 -10% -5% 부동산 증서 -5% 파생상품 -5% 무보장대출 (1인당1%이하) -10% 단일부동산 자산	- free asset의 15%	- 모든 자산은 벨기에와 EC영역내에 있어야 함 -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위원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에 한해서 투자 가능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캐나다	-10%총장부가에서 단일 기업 또는 개인의 주식, 채권 -5% 단일 자산	-허가(단, 전체 자산의 10%로 제한) -증권은 공공거래를 통해 획득해야 함	해외증권투자 30%이내	동일회사의결권지분 30%이내
체코	-단일 발행자의 증권은 10% 한도 편입 -단일은행의저축 10% 까지 허용(단일부동산 또는 유동 자산은 전체 연기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른 연기금의 지분에 대한 투자 금지	- 해외 투자는 OECD 국가의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해서 허용	-연기금은 동일회사의 유가증권을 해당회사 전체의 20%를 초과하여 이상 포함시킬 수 없음
덴마크	-자산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일 자산에 대해선 규제	-기업연금에 한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는 8% 제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고위험 자산은 70% -부동산 70% -최소80%이상의 currency matching 규제 (부채의 50%까지 유로화 표시자산 보유)	기업 연금의 경우 단일기업에 대해 8% 이상의 투자 금지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 보증대출 또는 quoted share</li> <li>- 최대 5% 단일기업의 quoted와 unquoted 지분</li> <li>- 15% 단일 부동산 또는 건물 그리고 단일 자산 또는 부동산 회사에 의해 보증된 담보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li> <li>- 15% 단일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로이외의 통화로 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20%</li> <li>- 모든 자산은 EEA 국가들에 위치해야 함 (단, EEA에 준하는 국가 OECD 국가도 가능)</li> <li>- 5% EEA가 아닌 OECD 국가 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li> </ul>	5% 단일회사의 quoted 또는 unquoted 지분
독일 Pension-fonds	5% 단일 발행자 30% 정부대출, 은행 예금, 담보채권	5% 다수의 기관에 의해 보증될 경우 10%	70% 유동성자산	5% 다수의 기관에 의해 보증될 경우 10%
Pensionkassen	5% 단일 발행자 30% 정부대출, 은행 예금, 담보채권	5%	80% 유동성자산 35% EU 증권 25% EU 부동산 10% 비EU 증권 10% 비EU 채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헝가리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동일 발행자의 증권을 10%이상 편입 금지  한 금융그룹내의 기관들이 발행한 증권을 전체 펀드에서 20%를 초과하여 편입 금지	연기금 펀드는 연기금 각출, 운용과 관련되는 회사지분을 10% 초과하여 투자 금지	해외투자 30% 초과 편입금지  전체 해외투자에서 비 OECD 투자는 20% 미만	연기금은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할 수 없음  동일한 발행자 증권을 10% 이상 보유 금지
아이슬랜드	- 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을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 - 정부보증 증권의 경우 상한선 없음 - 금융기관 이외의 무담보 회사채의 경우 5% 이상 편입 금지	연기금 관리자나 스텝에 대한 대출은 금지 그러나 연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출 가능	- 정부보증 채권, 담보 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편입 금지 - 해외투자는 OECD국가의 증권만 허용 (quoted는 50% 까지 unquoted는 10% 제한)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해외의무	연기금은 기업 지분의 15% 이상 편입 금지 (단, 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거나 25% 이상의 지분이 단일개방형펀드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 제외)

국명	투자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아이슬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을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li> <li>-정부 보증 증권의 경우 상한선 없음</li> <li>-금융기관 이외의 무담보 회사채의 경우 5% 이상 편입 금지</li> </ul>	연기금 관리자나 스텝에 대한 대출은 금지 그러나 연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보증채권, 담보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편입 금지</li> <li>-해외투자는 OECD 국가의 증권만 허용되며 이중 quoted는 50% 까지 unquoted는 10% 까지 제한</li> <li>-외화표시자산의 경우 50% 이상 해외의무</li> </ul>	연기금은 기업지분의 15% 이상 편입 금지 (단, 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거나 25% 이상의 지분이 단일개방형펀드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 제외)
아일랜드	없음(단, 지급여력입증시 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에 10%의 한도 부여)	제한 없음(단, 회사자산은 지급여력입증시 전체 자산의 5% 한도 부여) - 자기투자가 전체 자산의 5%를 상회할 경우 공개 의무	없음	없음
일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이탈리아	단일발행자증권은 전체연기금 15%이내로 제한	허용(동일회사 연기금은 20% 미만, 다수의 회사인 경우에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이상의 자산을 연금지급통화와 동일한 통화 표시자산에 투자</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OECD 국가 증권은 50% 미만</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OECD 국가 자산은 5% 미만</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OECD 자산은 투자 금지</li> </ul>	폐쇄형투자펀드 25% 이내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관련 증권은 기준에서 제외</li> <li>- 5% 신용등급 AAA 단일기관</li> <li>- 3% 신용등급 AA 단일기관</li> <li>- 1% 신용등급 A</li> <li>- 15%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li> </ul>	5%까지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이상의 자산이 물가 연동 증권이어야 함</li> <li>- 10% 민간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li> <li>- 멕시코기업의 외화표시 증권인 경우 BBB- 이상이어야 함</li> <li>- 발행 증권은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등급을 받아야 함</li> <li>-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li> </ul>	20% 동일발행자의 지분
네덜란드	분산투자 원칙 없음	기업주투자 5%이내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투자 의무</li> <li>-0.5%단일무보 증대출</li> <li>-한기업과 관련된 증권 및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연기금의 10%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금납부 기업주에 대한 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하며 전체 자산의 20%이하</li> <li>-연기금은 각출 기업의 주식 소유 금지</li> </ul>	연금을 지급시 사용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의 자산에 적어도 80% 투자	없음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한기관에서 제공된 담보</li> <li>-5%하나의 같은 계열 은행 저축</li> <li>-2% 폐쇄형 단일투자 펀드투자(5%개방형)</li> <li>-5% 단일 또는 동일 계열기관에서발행한 증권</li> </ul>	<p>OPF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금자산은 연기금 납부기업 및 관련기관의 자산에 투자 금지</li> </ul> <p>EPF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F회사증권에 투자 금지</li> <li>-EPF회사의 주주 또는 관련사의 증권에 5% 이상 투자 금지</li> <li>(공개거래 대상 증권 의 경우 12.5%)</li> <li>-7.5% 이상의 자산은 공개거래 대상 증권에 투자</li> </ul>	해외투자는 5%	OPF:연기금은 단일담보,기관, 폐쇄형드에 10% 이상 투자 금지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포르투갈	-5% 단일사업자의 증권 또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 -10% 단일부동산에 대한 투자	-20% 연기금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 -25% 연기금을 납부하는 회사 또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의 부동산	-적어도 80% 포르투갈내 연기금의 기준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 -20% 해외 투자 (10% 비OECD 채권, 3% 비OECD 주식)	-단일회사지분 10% 이상 보유 금지 -연기금운용자는 의결권 지분은 20% 이상 보유 금지
슬로바키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페인	10% 단일기관에 대한 투자	10% 이내	-90% 자산은 공식적거래시장에서 인정 자산에 투자 -예금 또는 다른 시장의 자산은 1~15% 이내 -OECD 회원국 증권은 제한 없음	-단일기관의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스웨덴	FSR : 없음	FSR 없음	FSR : 없음	FSR : 없음
	-IR: 5% 단일기관의 주식, 채권, 등 증권 -5% 단일 부동산 -10% 투자펀드	IR: 없음	IR : 없음	IR :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단일기관에 대한 채권 (해외는 5%)</li> <li>국채, 은행, 보험사는 제외</li> <li>- 동일회사증권에 대한 투자 10% 이내 (해외는 5%)</li> </ul>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은 헤지용도로 제한</li> <li>- 30% 해외투자 (이중 25% 주식, 20% 외화 표시채권, 30% CHF채권)</li> <li>- 상품별 제한(국내외 주식50%, 국내외채권30%, 국내외부동산70%)</li> </ul>	없음
터어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단일기관의 금융증권에 대한 투자</li> <li>- 한계열기업군의 금융증권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납부기업 및 운용기관자기투자금지</li> <li>- 연기금은 기금을 납부하는 기업주식의 소유는 20% 까지 제한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이사회 의장과 임원, 직간접 관계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관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만이 연기금펀드의 투자 대상</li> <li>- 일반회사의 증권은 5~40% 범위에서 투자</li> <li>-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5% 이하</li> <li>- 거래소의 주식 투자는 20% 이하</li> <li>- 국채는 30% 이상</li> <li>- 해외증권은 15% 이하</li> <li>- 파생상품투자는 헤지용도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회사연기금펀드는 5%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 보유 금지</li> <li>- 한 연기금기관이 설립한 펀드들은 합산하여 20%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 보유 금지</li> </ul>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영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기업주자산 5% 이내	없음	없음
미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 모든 DB형과 일 부 DC형 연기 금에서 고용주 의 증권이나 부 동 산 투 자 는 10%로 제한 - 이해관계가 있 는 집단 사이의 거래는 제한되 며 위반시는 세 금 공제에서 제 외	미국 법원의 인 정을 받은 자산 으로 제한	없음

## &lt;별첨Ⅲ&gt; OECD주요국의 연금기금 포트폴리오규제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호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스트리아	50%	2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벨기에	없음(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캐나다	없음	25% 부동산 또는 자원 자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체코	25%(quoted)	없음	없음	25%	0%	10%
덴마크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우량증권의 경우)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핀란드	50% (quoted) 10% (unquoted)	40%	없음	없음	70%(부 동산 및 빌등을 포함하는 담보 대출) 10%(후 순위 대출)	없음
독일 Pensions -Kassen Pensionsf -onds	35% (quoted) 10% (unquoted) 없음	25%  없음	50%  없음	35% (주식포 함)  없음	50% (담보) 10% (그외) 없음	50%  없음
아이슬 란드	50% (quoted) 10% (unquoted)	0%	50% (금융기관) 50% (지방자치단 체)	없음	없음	없음

국 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헝가리	50%(MPF)	5%(직접투자) 10%(부동산투자펀드 포함)	30%(기업, 지방자치단체) 없음(금융기관) 25% (담보)	50%	0% (MPF)	없음
	60%(VPF)	10% 직접 또는 부동산 투자 펀드 포함	상동	상동	30% (VPF) 5% 펀드가 입자 대출 (VPF)	없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탈리아	없음	없음	없음	20%	없음	20% (유동자산)
일 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없음
한 국	40%	15%	-	-	-	-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멕시코	0%	0%	없음(국채, AAA 등급 회사채) 35% (AA 등급 회사채) 5% (A 등급 회사채)	0%	0%	25만 페소 \$2,500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까지 예금)
네덜란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노르웨이	35%	없음	30% (회사채)	30%	1% (무담보 대출)	없음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폴란드 OPF	40% (quoted) 10% (secondary market 또는 비상장 주식)	0%	30%(담보) 15%(지방자 치단체) 10%(회사채)	10% (국립투 자펀드), 10% (폐쇄형) ,15% (개방형)	Equal to investme nt in the shares of the borrower	20%
EPF	없음	0%	5%	없음	상동	없음
포르투갈	50%	45%	60% (회사채)	30%	25% (담보)	30%
스페인	없음 (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10% (담보보 증이 없는 경우)	15%
스웨덴	FSR :0%	FSR :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가치 의 4/5 또는 2/3또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70% 는 60%	FSR : 없음 (주정부나 그에 준하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을 하여야 함	FSR :0%	FSR:없음 (담보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한 대출만 허용)	FSR: 0%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스웨덴	IR: 25% (quoted) 10% (unquoted)	IR: 25%	IR : 없음 주정부채 권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75%다른 경우  10% unquoted	IR : 투자 펀드는 직접 소유 자산에 같은 종류별로 합산한 후 그 합이 해당 자산 구성한도를 넘지말아야 함 (25% quoted share)	IR: 25%(부 동산담보 대출)  10%다른 경우	IR: 75%
스위스	30%	20%				
터키	없음	0%	없음	10%	10%	10%
영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미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별첨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 등 퇴직급여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li> <li>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li> <li>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li> <li>4. “퇴직급여”라 함은 이 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말한다.</li> <li>5. “퇴직연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6.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p> <p>7.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사용자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p> <p>8. “개인퇴직저축계좌” 라 함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그 일시금 등을 적립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를 말한다.</p> <p>9. “가입자” 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한다.</p> <p>10. “퇴직연금사업자” 라 함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11. “자산관리업무” 라 함은 가입자별 계좌 설정, 부담금 수령,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적립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DC형)</p> <p>12. “사무관리업무” 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당해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운용결과 등의 기록·보관·통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DC형)</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퇴직급여제도)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2장의 퇴직금제도, 제3장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4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1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p> <p>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 조(제외 대상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자</li> <li>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퇴직금제도</b></p> <p>제5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p>③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p>	<p>제 조(평균임금)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p> <p>제 조(퇴직보험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3.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p> <p>4.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p> <p>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6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p> <p>③제2항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사용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b></p> <p>제8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퇴직연금의 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p>	<p>제 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요건)①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퇴직하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급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3.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급여의 예상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p> <p>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p> <p>3. 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은 퇴직시 수령하게 될 일시금의 액을 기초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p> <p>4.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매년말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것)</p> <p>5.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 조(연금의 종류 및 수급자격)①법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p> <p>②일시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자 중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p> <p>제 조(가입자 명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b></p> <p>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장에서 “퇴직연금”이라 한다)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li> <li>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 취득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p> <p>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며, 그 외에 해당 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을 것</p> <p>나. 가입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p> <p>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다만 가입자의 탈퇴시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5.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p> <p>6.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p> <p>가.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3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나.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원금 보장방법(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이 포함되며,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대상과 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일 것</p> <p>다. 운용방법별 이익의 예상 및 손실의 가능성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p> <p>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 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p> <p>7.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p> <p>8.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될 것)</p>	<p>제 조(중도인출 사유 및 기간) 법 제1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자이었던 자의 6월 이상의 실직</li> <li>2. 부양가족의 장기간의 요양</li> <li>3. 주택구입</li> <li>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p> <p>10.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p> <p>11.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2조(퇴직연금사업자)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일반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조(인가요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가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p>	<p>※ 1 호 및 제2호는 신탁업법 제3조의3과 동일</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④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제13조(자산관리업무의 위탁)사용자는 규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에 충당할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업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li> <li>2.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li> </ol> <p>제14조(사무관리업무의 위탁)사용자는 사무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받은 사무관리업무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 조(자산관리계약)①법 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를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일 것</li> <li>2.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li> </ol> <p>②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계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가입자를 수익자로 하는 것일 것</li> <li>2.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개인퇴직저축계좌</b></p> <p>제15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자격)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6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취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은 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를 취급할 수 있다.</p> <p>제17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및 사무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8조(개인퇴직저축계좌 계약의 요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은 제11조의 퇴직연금규약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담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책무 및 감독</b></p> <p>제19조(사용자의 책무)①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li> <li>2.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li> <li>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20조(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①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할 것</li> <li>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사무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가입자 또는 당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p> <p>②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p> <p>2.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행위</p> <p>제21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들어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징수하거나 질문 또는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퇴직연금 설정·운영이 법령, 규약 또는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 2항의 시정 또는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②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취급정지 또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보 칙</b></p> <p>제23조(수급권의 보호)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될 수 없다.</p> <p>제24조(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사용자의 부담금 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 그 이후 시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립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처리)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6조(정부의 책무)①정부는 이 법의 퇴직급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저축계좌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p> <p>제27조(업무협조)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 고용보험법 제 81조의 2와 동일한 내용</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별 칙</b></p> <p>제29조(과태료)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0조(벌칙)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 1 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년 ○월 ○일부터 적용하되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조(급여 및 비용부담)①연도별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1/2</li> <li>2.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5/6</li> <li>3.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2/3</li> <li>4. 200○년 ○월이후 : 30일분 평균임금</li> </ol> <p>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비용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24</li> <li>2.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20</li> <li>3.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16</li> <li>4. 200○년 ○월이후 : 매월 임금총액의 1/12</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로 본다.</p> <p>②퇴직금우선변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 우선변제는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p> <p>2. 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 우선변제는 1997년 12월2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의 1997년 12월 24일 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조(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제34조, 제37조제1항중 “퇴직금” 및 제37조제2호는 삭제한다.</p> <p>②그 밖에 다른 법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인용·준용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본다.</p> <p>③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p>	<p>제 조 (이 영에 의한 다른 영의 개정)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을 “이 법 제5조 제3항, 제3장, 제4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한다.</p>	



##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12

2004-1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 I )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운,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오영수,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지기 (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정기간행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통계월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동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개발연구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b>연회비</b>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b>제공자료</b>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 보험통계월보 -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 저 자 약 력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인  
『보험수리학』, 『보험이론 및 실무』의 다수  
전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보험감독원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e-mail: keon@kidi.or.kr)

이태열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e-mail: tylee@kidi.or.kr)

연구보고서 2004-2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4년 7월 日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엔피

전화 (02) 2267-4112

---

ISBN89-5710-011-3 93320

정가10,000원